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24 선고 2019가단595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변론 종결2019. 8. 27.

판결 선고2019. 9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,177,123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최용호

별지